

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범우

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박상돈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29일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1일

3. 제안이유

- 「공예문화산업 진흥법」에 따라 지역의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 육성을 지원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공예문화산업에 대한 목적, 정의를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공예문화산업 지원계획 수립 규정(안 제4조)
- 우수공예품의 우선구매 관련 규정(안 제5조)
-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마련(안 제6조)
- 공예인 역량강화 교육 지원 관련 규정(안 제11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의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공예품 개발, 판로확보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공예인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

- 주요내용은
 -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등을 정의하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발굴과 지원을 마련토록 하는 등 충청북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 - 안 제4조와 안 제5조는 공예문화산업 진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단기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였고, 또한, 우수공예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공예품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규정 제정하였음.
 -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, 아울러 지역특화 우수공예품의 개발도 장려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제정하였으며,
 -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공예문화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공예품대전, 우수사례 시상, 홍보·판매전, 공예인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- 금번 조례안은 그동안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법적·제도적 장치가 다소 미비하여 문화적 측면에서도 생활 속의 예술이라는 공예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어 공예문화산업의 체계적 진흥방안을 마련하였으며,
- 또한,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의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을 이행하고 각종 지원규정을 적용한 위임입법 성격의 조례안으로서, 공예문화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붙임: 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. 끝.